

이천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추진위원회 조례

소관부서 : 문화예술과

제정 2007·10·16 조례 제 686호
일부개정 2014·12·31 조례 제1102호
(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)
일부개정 2021·6·25 조례 제1716호
(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
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 추진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.

③ 위원은 미술·조각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사 및 문화예술분야에 관심이 많고, 축제행사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다.

제3조(기능)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의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수립
2.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의 예산집행 및 결산
3.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분석
4. 조각 작품의 보관 및 처리 운영에 관한 사항
5. 조각 공원 설립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에 관한 사항

제4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1. 임기 중 사망한 경우
2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3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4.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

제6조(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예산 지원 및 정산 등)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포함한보조금 신청서를 사업시행 1개월 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.

1. 사업내용의 적합여부
2.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

④ 위원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사업 완료 후 정산서를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고 지도·감독한다.

제9조(평가보고회 개최) 위원장은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

개선사항 등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사업추진 시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4·12·31, 2021·6·25>

제11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.

부칙 <2014·12·31 조례 제1102호,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 생략

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⑰ 까지 생략

⑱ 「이천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추진위원회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 「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 ”를 “ 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”로 한다.

⑲ 부터 ⑳ 까지 생략

부칙 <2021·6·25 조례 제1716호,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
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